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3. 7. 13.  
行政財務委員會

####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3年 6月 10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1993年 6月 12日 回附
- 다. 第19回 永登浦區議會(開會中) 第1次 委員會 (1993年 7月 13日) 上程議決

####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總務局長 辛金柱)

- 가. 提案理由  
속기업무는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나 정원이 기능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인력확보 애로 및 처우개선 등을 고려한 것임.
- 나. 主要骨子  
기능직 정원중 8등급 지방사무보조원(필기, 속기) 2명과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필기, 속기) 2명을 별정직 7급상당 1명과 8급상당 2명 9급상당 1명으로 조정 개정함.

####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姜性熙)

- 가. 1993. 6. 10. 영등포구청장이 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속기사의 인력 확보상의 애로사항 해소와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현재 그 신분이 기능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구의회사무국소속 속기사(4명)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동의회사무국설치조례 별표 정원표란의 기능직정원중 8등급 지방사무보조원(필기, 속기) 2명과,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필기, 속기) 2명을 별정직 7급상당 1명과 8등급상당 2명, 9등급상당 1명으로 조정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 나. 이미 시정12230-341(93. 5. 19)로 서울특

별시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정원승인을 받은 사안이므로 요청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 4. 審査結果: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7
----------	-----

제출년월일: 1993. 6. 10.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속기업무는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나 정원이 기능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인력확보 애로 및 처우개선 등을 고려한 것임.
- 2. 주요골자  
기능직 정원중 8등급 지방사무보조원(필기, 속기) 2명과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필기, 속기) 2명을 별정직 7급상당 1명과 8급상당 2명 9급상당 1명으로 조정 개정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직원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직원 정원표

직	급	정원	정원내용
4	급	1	지방서기관 1
5	급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6	급	3	지방행정주사 3
7	급	3	지방행정주사보 3
8	급	3	지방행정서기 3
9	급	2	지방행정서기보 2
별정직		6	7급상당 2:속기사 1, 비서 1 8급상당 2:속기사 2 9급상당 2:속기사 1, 비서 1
기능직		7	9등급 3: 지방사무보조원(필기, 행보) 1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 지방방호원(방호) 1 10등급 4: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 지방방호원(방호) 1 지방운전원 2
합계		27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기능직의 별정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별 정 직	○ 비서(7급상당)	1	직	급
	○ 비서(9급상당)	1	정원	정 원 내 용
○ 별정직 또는 일반직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2	4	급
		2	5	급
○ 일 반 직	○ 지방서기관	1	6	급
	○ 지방행정주사	3	7	급
	○ 지방행정주사보	3	8	급
	○ 지방행정서기	3	9	급
	○ 지방행정서기보	2		
	○ 기 능 직			
○ 8등급 지방사무보조원(필기)-속기사	2	기 능 직	7	9등급3: 지방사무보조원 (필기, 행보) 1 지방사무보조원 (타자) 1 지방방호원(방호) 1 10등급4: 지방사무보조원 (타자) 1 지방방호원(방호) 1 지방운전원 2
○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필기)-속기사	2			
○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필기)-표결사	1			
○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			
○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			
○ 9등급 지방방호원	1			
○ 10등급 지방방호원	1			
○ 10등급 지방운전원	2			
		합	계	27